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0 May 2016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apan: Country-by-country reporting requirements](#)

일본 과세당국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이전가격 제도를 발표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

(Tel: 02-2112-0982)

국가별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모회사가 일본에 소재하며 연간 연결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엔(약 1조 원) 이상인 내국법인, 그리고
- 일본 내 자회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일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의무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거나 혹은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소유한 해외법인(일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의무가 없는 국가에 모회사를 둔 경우)

추가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과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소유한 해외법인은 최종 모회사의 회사명, 주요 사업 장소, 실질적 사업 관리 장소, 대표자명, 기업 식별 번호(제공 가능 시)를 포함하는 기본 정보 제출 의무를 가집니다.

- 제출 의무: 국가별보고서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e-Tax"를 통하여 제출되고 직전 사업연도 연결 매출 1,000 억 엔(약 1 조 원) 미만의 다국적기업은 해당 의무에서 면제됨

- 제출 기한: 납세자는 다국적기업 최종 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제출 의무는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언어: 국가별보고서는 영어로 작성 필요함
- Penalty: 국가별보고서 미제출시 최대 30만 엔(약 3백만 원)의 벌금 부과됨

통합기업보고서

다국적기업의 일본 소재 법인과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소유한 해외법인의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의무: 인터넷 기반 시스템 “e-Tax”를 통한 전자적 제출이 요구됨. 직전 사업연도 연결 매출 1,000억 엔(약 1조 원) 미만의 다국적기업은 해당 의무에서 면제됨
- 제출 기한: 납세자는 다국적기업 최종 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언어: 통합기업보고서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함
- Penalty: 통합기업보고서 미제출시 최대 30만 엔(약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개별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에 대하여 규정된 제출 의무는 없지만 납세자는 동기화 목적으로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며 7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보관기한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내부 거래 규모가 50억 엔(약 5백억 원) 미만이며 무형자산 거래 규모가 3억 엔(약 30억 원) 미만인 납세자는 개별기업보고서 구비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납세자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기업보고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 세부 규정: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및 구비 필요. 과세당국의 요청 시 4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된 Back up 정보는 60일 이내에 제출 필요하며 미 제출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KPMG 의견

개별기업보고서 구비 의무의 경우 법인세 신고일까지 구비를 완료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준비 기간(연결납세신고가 아닐 경우)만이 주어지므로 이는 매우 촉박한

일정입니다. 따라서, 개별기업보고서 양식 작성 등의 사전적인 준비를 권고합니다.

새로운 이전가격 규정에서는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에 대한 벌금은 규정에서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았을 시에 부과되며 개별기업보고서는 과세당국 요청 후 45일 내 제출하지 않았을 시 부과됩니다.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의 “전자 문서” 제출 의무는 일본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는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이 법인별로 일관성을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모회사는 과세당국과의 잠재적 이견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가격 정책을 재수립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등에 포함되는 항목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Back to top](#)

Switzerl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implementing legislation advances

스위스 연방 의회는 2016년 4월부로 국가간 국가별보고서 교환 및 관련 규정 도입과 관련된 다자간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정상 첫 번째 교환은 2020년으로 예상되나 그 이전에도 자동 정보 교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BEPS 입법 현황

전 세계적으로 BEPS 입법은 (최소 기준으로 합의된 통합적 Action plan 위주로)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초 기준으로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 영국, 호주, 일본, 멕시코 12개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 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며, 독일, 중국, 미국, 인도 등 8개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와 관련된 조항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OECD의 BEPS Action 13 근간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2016년 4월에 EU에서는 EU내 다국적기업 국가별보고서의 공개에 대한 제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국가별보고서 공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으며, 스위스를 포함한 EU내 다국적 기업들은 이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스위스 입법 현황

스위스 연방 법률(Swiss Federal Act on the International Automatic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 of Multinationals” 또는 “ALBA – Gesetz)에 대한 협의는 2016년 4월 13일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2016년 7월 13일 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상정된 법안은 큰 틀에서 OECD의 BEPS Action 13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종 모회사가 스위스 소재인 경우, 연결 매출이 7.5억 유로(약 1조 원)를 초과하는 법인은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약 200개의 스위스 소재 법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잠정 파악됩니다.

국가별보고서 관련 조항 제정 및 적용

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국가별보고서 관련 조항은 2018년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회사들은 2019년에 2018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스위스 과세당국은 2020년 상반기에 타 국가들과 자동 정보 교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PMG 의견

스위스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은 2018 사업연도부터 해당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국가별보고서 관련 법안이 제정 및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위스 다국적기업의 현지 자회사에 대한 2016 사업연도 대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 도입 시점은 비밀 보장 문제 등으로 인하여 OECD 국가간 간 협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안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국가별보고서 관련 조항 초안 29조에 의하면 2018년 이전에도 스위스 과세당국을 통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이 허용되며, 이에 따라 스위스 다국적기업은 “자발적” 국가별보고서 제출이 허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결매출이 7.5억 유로(약 1조 원)을 초과하는 스위스 다국적기업 혹은 스위스에 모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국가별보고서 작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ack to top](#)

[**Canada: Procedures for exchange of tax rulings under BEPS rules**](#)

캐나다 국세청(CRA)은 타 국가에 자국의 판례를 공유할 경우 준수해야 할 실무적인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타 국가에 자국 내 판례 제공 시 따라야 할 준수사항, 절차 그리고 납세자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요

투명성 강화를 위한 OECD 권고에 따라, 캐나다 과세당국은 아래의 판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의 모회사 및 특수관계자 소재 국가와 판례 공유가 가능함을 발표하였습니다.

- 일정 조건에 따라 세무적 혜택 수혜 관련 판례
- 이전가격 관련 판례
- 일방적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된 판례
- 고정사업장 관련 판례
- 특수관계자 도관업체 관련 판결 (도관업체를 통한 국가간 자금 또는 소득 이전 등)

타 국가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 요구가 요청될 수 있으며 국가간 정보교환은 캐나다 과세당국의 관할기관(Competent Authority Services Division)에서 조세 조약 및 기타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수행합니다.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모회사 및 특수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ack to top](#)

Bermuda agrees to Country-by-country tax reporting; exchanges start in 2017

버뮤다는 타 국가들과 국가별보고서 자동 정보 공유에 동의하였고 이는 2017년부터 적용 됩니다.

버뮤다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이며 4월 20일부로 협정이 체결 되었습니다. 해당 협정으로 국제적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대응의 일환으로 OECD에서 발표한 BEPS Action 13 상의 새로운 공시 의무 규정이 도입됩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해당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향후 상호 정보 교환 협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는 회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임직원수, 매출액, 영업이익, 세금납부 실적 등의 정보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의 의도적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6 과세 연도에 대한 정보 교환은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버뮤다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체결 국가 중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대표적인 친기업 세제혜택 제공 국가입니다.

버뮤다의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체결은 타 저세율 국가들에게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체결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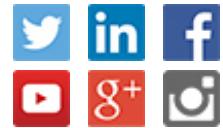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